

의 안 번 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

의 결 사 항	
---------	--

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 연월일	2023. 5. 12.

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5. 12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제정이유

다변화하는 행정환경 변화속에서 군정 주요 현안과제 해결, 국·도비 확보 등 군정발전을 위해 대외협력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대외협력관의 임무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대외협력관의 위촉 및 품위유지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다. 대외협력관의 임기 및 위촉해제(안 제5조 ~ 안 제6조)
- 라. 보상 등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
 - 1) 기획예산담당관(예산담당): 해당사항 없음
 - 2)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3-530호

가) 예고기간: 2023. 3. 30. ~ 2023. 4. 18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의 주요 현안과제 해결, 국·도비 확보 등 대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대외협력관(이하“협력관”이라 한다)은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군정 발전을 위한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·지원한다.

1. 주요 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
2. 국·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
3.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위촉) ① 협력관은 행정, 문화·체육·관광, 농·수·축산, 마케팅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② 협력관의 수는 제2조 각 호별 2명 이내로 한다.

제4조(품위유지) 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고성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임기) 협력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위촉해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2. 협력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3.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
4.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

제7조(보상 등) 협력관은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요청한 임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
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